## 인체유래데이터은행 기탁·등록에 관한 안내

### □ 개요

- (취지) 인체에서 유래한 인체유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여 산·학·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데이터 전문 인체유래물은행(인체유래데이터은행) 개설
- (근거)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생명윤리법")

####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13. "인체유래물은행"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(疫學情報), 임상정보 등을 수집·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 제41조(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) 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8조(인체유래물등의 제공)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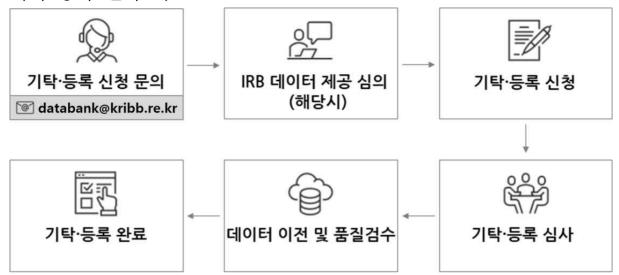
○ **(인체유래데이터은행)** 인체유래정보는 인체유래데이터은행 (Korea Human Biological Data Bank, KHBDB)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<a href="https://kbds.re.kr/khbdb">https://kbds.re.kr/khbdb</a>

(Email) databank@kribb.re.kr

- (등록 대상) <u>사람으로부터 수집된 임상·역학정보</u>와 생명윤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\*로부터 분석된 유전정보 등
  - \*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·세포·혈액·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, 혈장, 염색체, DNA, RNA, 단백질 등

### □ 인체유래데이터은행 기탁·등록 절차

○ 기탁·등록 절차 개요



- 기탁·등록 신청 구비서류
  - 1) 인체유래정보 기탁·등록 신청서
  - 2) 인체유래정보의 제공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- 3) 기증자가 연구(사업)에 참여 시 서명한 <u>동의서 사본\* 1부</u> 및 <u>전체</u> <u>기증자의 동의 정보(</u>아래 표 참고)
    - \*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양식에 기증자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서 임의의 기증자 1인의 동의서 사본을 개인식별정보 제거한 상태로 제출

| 동의서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증자 동의 정보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<br>(별지 제41호 서식) | 과제기간, 식별번호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동의서 작성일, 기증자<br>서명 유무, 법정대리인 성명 및 서명 유무(해당시), 법정대리인<br>증빙서류 유무(해당시)  |
|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<br>(별지 제34호 서식)   | 과제기간, 식별번호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연구목적, <u>보존기간</u> , <u>2차적 사용 제공동의</u> , <u>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</u> , 동의서 작성일, 기증자 서명 유무, 법정대리인 성명 및 서명 유무(해당시),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유무(해당시) |
| 사업참여 동의서<br>(임의서식)             | 과제기간, 식별번호, 성명, 기증자 서명 유무, 개인정보(건강에 관한<br>정보 등) 동의 항목(해당시) 등   |

- 4) 유전정보, 오믹스정보 및 임상·역학정보 등의 <u>생산기법, 분석기기,</u> 품질관리 조건 등에 관한 자료
- 5) 인체유래정보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6) 등록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
#### ○ 기탁·등록 절차 상세

1. 인체유래정보 기탁·등록신청

- ▶ 인체유래정보 기탁·등록신청 서류 제출
- 인체유래정보 기탁·등록 신청서
-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서
- 동의서 사본 1부 및 동의 정보
- 정도관리 결과 및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
- 인체유래정보 수집·제작·보관·관리 등에 대한 정보
- 등록신청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ŧ

2. 기탁·등록신청 접수

▶ 기탁·등록신청 접수

▶ 기탁·등록신청 구비서류 검토 및 서류 보완

1

3. 기탁·등록 심사

- ▶ 기탁·등록 결정 심사 기준
- 인체유래정보의 중요성 및 활용성 등 자원의 가치
- 인체유래정보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
- 은행의 저장장비, 보관시설 등의 수용능력

1

4. 인체유래정보 이전 협약

- ▶ 인체유래정보 이전 협약 내용
- 인체유래정보 이전, 이용, 경비, 기탁·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

1

5. 인체유래정보 이전

- ▶ 인체유래정보 이전 준비(등록신청자) 및 정도관리
- ▶ 인체유래정보 이전(등록신청자 직접 전달, 우편 배송, FTP 전송)

1

6. 인체유래정보 검수

- ▶ 인체유래정보 검수
- 인체유래정보의 정보 저장 파일 확인(무결성 확인)
-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정도관리 결과와 설명서, 코드북 등 검수 및 인체유래정보의 유효성 검사
- ※ 검수 중 오류 확인 시 반송 및 수정 보완 요청

₽

7. 인체유래정보 반송

- ▶ 인체유래정보 반송
- 검수 중 오류를 확인한 경우
- 인체유래정보의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
- ▶오류사항 수정 및 인체유래정보 전체 정도관리 후 재이전

Ţ

8. 인체유래정보 기탁·등록

▶ 인체유래정보 기탁·등록 확인서 작성

#### □ 점검 사항

- 기증자의 동의 여부
  -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유래물 연구 전에 기증자로부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

####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

제37조(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)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1.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
- 2.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3.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
- 4.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(이하 "인체유래물등"이라 한다)의 제공에 관한 사항
- 5. 동의의 철회,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등의 처리,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, 연구 목적의 변경,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기증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는 별지 제34호서식(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)을 사용해야 함
- <u>인체유래물 연구자는</u> 생명윤리법 제38조 1항에 따라 <u>기증자로부터</u> 인체유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<u>서면동의를 받은 경우,</u> <u>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</u> 인체유래정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음
- 단,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유래데이터은행과 협의하여 별지 제41호 서식(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)을 구득한 경우,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없이 은행에 인체유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

## ○ 기증자의 동의 정보 확인

- 연구자가 별지 제34호서식(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)을 구득한 경우, 기증자의 인체유래정보를 인체유래데이터은행에 제공하겠다는 추가적인 문구가 없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인체유래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음
  - 인체유래물등의 보존기간이 등록 시점 기준으로 5년 이상 남아있을 것

• 보존 기간 내 <u>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에 **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**</u> 하는 것에 동의가 되어있을 것

<생명윤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 서식]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일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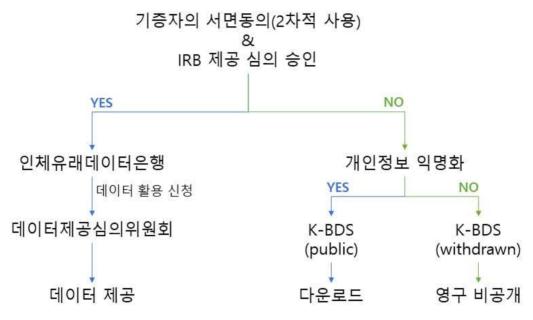
|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.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동의<br>내 용 | 연구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| 인체유래물 종류 및 수량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| 인체유래물 보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| 1. 영구보존 [ ]<br>2. 동의 후 [ ] 년  |
|           |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<br>제공 여부      | 1. 유사한 연구 범위 안에서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<br>2.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[ ]<br>3. 동의하지 않습니다. [ ] |
|           |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<br>식별정보 포함 여부 | 1. 개인식별정보 포함 [ ]<br>2. 개인식별정보 불포함 [ ]   |

#### 붙임1

# K-BDS 등록과 인체유래데이터은행 기탁·등록의 차이

- 인체유래데이터 등록
  - 인체유래물연구를 통해 수집·생산된 연구데이터(인체유래데이터) 등록 시 2차적 사용을 위한 연구대상자(기증자)의 서면동의와 연구책임자 기관IRB의 제공심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인체유래데이터은행과 K-BDS 등록이 결정됨

<기증자 동의와 IRB 제공심의 여부에 따른 데이터 등록 흐름도>



- 인체유래데이터은행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, 인체유래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기관의 데이터심의위원회(DRB)나 IRB를 통해 심의를 받고 K-BDS에 등록할 수 있음
- K-BDS에 withdrawn 데이터 타입으로 등록되면 영구 비공개 처리되며,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연구자는 데이터 등록자에게 직접 활용신청을 해야 함